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4- 624호

**도시계획시설사업(아현2 재정비촉진구역 내 소공원
조성공사)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**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347호(2011.11.24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 최초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8호(2013.01.17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 최종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244호(2013.07.25.)로 공원조성계획 결정(최초) 된 아현2 재정비촉진구역 내 소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,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」 제16조의2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.

2024. 4. 18.

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가. 사업시행지 위치: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591-62번지 일원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1) 사업의 종류: 도시계획시설(소공원 조성) 사업

2) 사업의 명칭: 아현2 재정비촉진구역 내 소공원 조성공사

다. 사업의 면적: 4,429.60㎡

라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1) 성 명: 아현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장 이영선

2) 주 소: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353-29 3층

마.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: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24. 12. 31.까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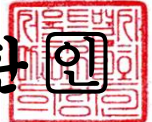
바. 열람기간: 2024. 4. 18. ~ 2024. 5. 2.

사. 열람장소: 마포구청 공원녹지과

아. 관계서류는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공원녹지과(☎3153-955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
일부개정규칙을 아래와 같이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백남환 인



2024년 4월 18일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규칙 제863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0조제1항 본문 중 “결정한다”를 “결정하며,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 또는 거수표결 등 기타 방법에 의한 기록표결로 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.

제40조제1항 단서의 후단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“제1항 또는 제2항”을 “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.

제55조의5의 제목 “(주민청구 조례안의 심사절차)”를 “(주민청구 조례안의 심사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후단 중 “대표자”를 “대표자 등”으로 한다.

① 위원장은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(이하 “청구인의 대표자 등”이라 한다)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

청구취지(청구인의 대표자 등과의 질의·답변을 포함한다)를 들을 수 있다.

② 위원장은 주민청구 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청구인의 대표자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출석 요청은 일시·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아니할 수 있다. 다만,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그 이유서를 심사일의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이 경우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.

④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85조제3항 중 “임기만료 전 사임한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문위원”을 “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40조(표결방법) ①	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. 다만,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 또는 거수표결로 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.	제40조(표결방법) ①	----- ----- -- 결정하며,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 또는 거수표결 등 기타 방법에 의한 기록표결로 할 수 있다. 다만,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. <후단 삭제>	
②	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무기명투표 또는 투표용지에 의한 기명·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.	<삭 제>		
③	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.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.	③	----- ----- ----- . -- ----- 제1항----- ----- -.	

④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 투표로 한다.

제55조의5(주민청구 조례안의 심사절차) 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삭 제>

제55조의5(주민청구 조례안의 심사) ① 위원장은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(이하 “청구인의 대표자 등”이라 한다)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(청구인의 대표자 등과의 질의·답변을 포함한다)를 들을 수 있다.

② 위원장은 주민청구 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청구인의 대표자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출석 요청은 일시·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아니할 수 있다. 다만,

<신 설>

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51조제1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로 본다.

제85조(자문위원회 구성 및 임기)

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임기만료 전 사임한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문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그 이유서를 심사일의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이 경우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.

④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⑤ -----

-----.
-- 대표자 등-----
-----.

제85조(자문위원회 구성 및 임기)

③ -----
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-----
-----.

마포구의 상징물



• 구의 휘장

마포가 지닌 다양한 특징들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하고, 다채로움이 공존하며 도시와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형상화



• 구의 꽃 : 목련 꽃

잎이 나기 전 목련나무에 피는 꽃이며, 향기가 진하고 색깔은 흰색이다. 꽃잎은 6개이고, 밑부분은 연한 홍색으로 청초한 인상을 준다.



• 구의 나무 : 단풍나무

잎이 붉고 아름다우며 공해와 병충해에 강하여 도심의 가로수나 공원수로 좋다.



• 구의 새 : 청둥오리

물오리로 마포의 밤섬에 많이 서식하는 겨울철새이다. 목이 짧고 부리는 평평하며 깃털은 수컷이 더 아름답다.



• 구의 색 : 초록색

안전을 상징하며 평화, 지성, 소박함을 뜻한다.